

■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의2] <개정 2022. 11. 29.>

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요건(제4조의5제2항 관련)

구분	세부기준
1. 시설 및 장비	<p>가.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</p> <p>나.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 운영을 위한 상시 활용이 가능한 1실 이상의 강의실(연면적 49.5㎡ 이상으로 할 것) 및 실습장 등 교육시설과 컴퓨터·빔 프로젝터 등 교육장비를 갖추어 것</p> <p>다. 화장실은 수강생 인원수에 맞는 적절한 규모를 갖추어 것</p> <p>라. 식수로 사용하는 물은 「먹는물관리법」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</p> <p>마. 교육환경에 방해되지 않도록 방음시설, 환기시설, 냉방·난방시설, 창문 등 채광시설 및 조명시설을 갖추어 것</p> <p>바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을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</p> <p>사. 그 밖에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 강당, 회의실, 사무실, 자료실, 도서실, 상담실, 컴퓨터실, 방송·통신시설, 보건실 등 필요한 시설을 둘 것</p>
2. 인력	<p>가.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전임강사 및 전문강사를 확보할 것. 이 경우 전임강사는 1명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나. 가목의 전임강사는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에서 의료, 보건, 간호 또는 산림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했을 것</p> <p>다.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전담하여 운영·관리하는 관리자를 1명 이상 확보할 것</p>
3. 교육과정	<p>가. 교육과정은 1급·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것</p> <p>나. 각 교육과정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하되, 1급·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교육과목을 구성할 것</p>

- 1) 산림치유 대상의 이해
- 2) 산림치유 자원의 이해
- 3) 산림치유의 기획·관리
- 4) 산림치유의 실행
- 5) 발표 및 선택과목

다. 그 밖에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